

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제 안 설 명

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 형 재 위원

안녕하십니까? 김 형 재 위원입니다.

송도호 위원장님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지난 5월 2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본 조례안의 취지를 말씀드리면,
2022년 1월 27일부터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, 공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는 사업주, 경영책임자, 공무원 및 법인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·보건 조치의무 이행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.

이에 시장으로 하여금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며 실태조사, 민관협력기구의 구성, 중점관리대상 지정·관리, 컨설팅 지원,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합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, 모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